

제318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20.
전문위원 신정경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개요

- 가. 의안번호: 제581호
- 나. 제출자: 진선아 의원 등 9인
- 다. 제출일자: 2026. 3. 23.
- 라. 회부일자: 2026. 4. 7.

2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- 나.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, 강제이행 절차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조례 전반의 자구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가.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 및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부과 규정 (안 제4조)
- 나. 미납 시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강제이행 절차 규정 마련(안 제4조)
- 다. 자치법규 순화 및 자구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- 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6. 3. 27.~2026. 4. 2.(의견없음)

II. 검토의견

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핵심 요점

□ 지방의회 공무원 여비(출장비) 부정수령 방지

- 실비 정산 원칙 준수: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이 아닌 증거 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
- 가산징수 범위 적정화: 여비 부정 수령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징수 금액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'부정 수령액의 5배'로 명확히 규정
 - 일부 자치구의 2배(미흡) 또는 10배(과도) 규정을 5배로 통일하도록 권고

□ 여비 부정 수령 가산징수 규정의 명확화(안 제4조제1항)

변경전	변경후
제4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	제4조(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(부정 수령액을 말한다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)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

<p>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</p>	<p>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</p> <p>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</p>
--	--

- 기존 “부정 수령액의 5배 상당액¹⁾” 등 불분명했던 표현을 환수금액(부정 수령액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)으로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수정함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에 따른 5배 가산징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함. 이는 타 자치구(영등포구 2배, 종로구 10배 등)의 부적정 사례를 개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판단됨

□ 미납 시 강제이행 절차 마련(안 제4조제2~3항)

<p>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--

-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
- 부정 수령액에 대한 실질적인 환수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로서,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행정의 강제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성도가 높음.

1) 상당액의 사전적 의미: ① 어지간히 많은 금액의 뜻으로 생각보다 꽤 많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포함. ② 일정한 기준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에 맞먹는 정도를 뜻함. 5배 상당액이라고 하면 5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음. 여비 부정 수령액은 정확한 금액 산출이 가능하므로 예외없는 확정금액으로 고시

□ 자치법규 순화 및 자구 정비

개정 조항	정비대상 조문	법제처 권고안
제3조	준용함에 있어서	준용할 때에
제3조제6호	~규정은	~는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,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해소하며,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함
- 특히 부정 수령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강제 환수 근거를 마련한 점은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관련 법규

□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
제8조의2(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)

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2주일 이내에,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제31조(가산징수 등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21. 11. 30.>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
·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
 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 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
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·지방공단 내부규정
-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현황

- 지방공무원의 국내출장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등을 준용하고 있고, 각 자치구의회의는 개별 조례로 별도 규정
 - 운임비·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 제출 후 정산
- 행정안전부는 상시적 관내 출장 사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특성을 고려, 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」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
 -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, 월지급 한도액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
□ 문제점

- ①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, 증
거서류를 통해 사후 정산하도록 했으나,
 -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등은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중 국내여비(운
임과 숙박비)의 결제·정산은 준용하지 않도록” 조례에 명시하여 실
비 정산을 하지 않거나 편법·악용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부정하
게 편취할 우려
 - ※ 허위영수증으로 운임비, 숙박비 수령 후 정산서류에 고의로 누락 가능
- ②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은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
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했으나,
 - 여비 부정 수령액은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함에도 대전광역시
중구의회 등은 환수 금액 및 가산징수 금액을 “부정 수령한 여비
상당액” 또는 “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”으로 불분명하게 규정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등은 **2배의 금액**을 가산·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제재의 실효성 미약
-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환수금액의 10배 상당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제재정도가 과도하게 높아 제재의 적정성·과잉금지원칙 저촉 우려

③ 행안부 표준안은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은 조례로 정하고, 월지급 한도액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으나,

-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등은 지급대상을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 편의대로 규정할 우려
-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등은 ‘상시출장을 요하는 소속 공무원’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지정 및 월액여비 지급 가능

[표 5] 지방의회 공무원 여비 규정 현황

구 분	관련 규정	운임·숙박 실비정산 제외여부	부정수령 환수금 및 가산징수 명확성	상시출장 여비 세부 지급기준 유무 (별표 등)
서울 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		미흡 (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)	

※ 부정수령 환수금에 대한 명확한 조례 내용이 없어,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개선방안

-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등은 국내 출장 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 등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
-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, 영등포구의회 등은 부정 수령액에 ‘해당’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‘5배’에 ‘해당’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개선

③ 조례에 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기준이 없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등은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고

-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기준이 불분명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등은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

5.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	
<p>② 출장비 부정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, 부정수령 금액의 2배, 5배 상당액이 아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·징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규정 개선</p>	<p>서울 강남구의회, 서울 강동구의회, 서울 강서구의회, 서울 광진구의회, 서울 구로구의회, 서울 금천구의회, 서울 동작구의회, 서울 마포구의회, 서울 서초구의회, 서울 성북구의회, 서울 영등포구의회, 서울 종로구의회, 부산 강서구의회, 대구 남구의회, 대구 동구의회, 대구 중구의회, 인천 계양구의회, 인천 동구의회, 인천 미추홀구의회, 인천 부평구의회, 인천 서구의회, 인천 중구의회, 광주 광산구의회, 광주 남구의회, 광주 동구의회, 대전 중구의회, 울산 북구의회</p>